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859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는 농식품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무공간 지원,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에 개소하여 운영 중임

나.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5. 9.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농식품 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지원 기반(국내외 기업·민간 기관과 협력 체계 등)을 보유한 기관에 본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함

다.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 개소일 : 2016. 12. 7.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강동그린타워 8~9층)
- 규모 : 연면적 3,123.84 m^2 (8층·9층 각 1,561.92 m^2)
- 주요시설 : 입주기업 사무공간, 공유주방(오픈키친), 회의실, 연구개발실, 영상제작공간 등

나.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
 - 입주자 모집·선발·평가, 사용료 징수 등 입주기업 관리
 - 교육·멘토링·네트워크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 위탁기간 : 3년(2025. 10.~2028. 9.)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30백만원('25년 4분기) ※ '25년 민간위탁금 425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는 2016년 12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261개 농식품 스타트업을 육성하였으며, 그 결과 누적 매출 2,207억원을 달성하는 등 농식품 분야 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음
- 농식품 산업 분야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업무는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는 투자·창업기획 관련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 국내외 다양한 농식품 분야 창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외부 투자 환경 변화에 취약한 초기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기 대응이 필요한 업무임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본 사무를 직영 운영 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조직 확대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운영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5. 5. 9.) 결과 : 적정

※ 작성자 :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임경진 (☎ 2133-4453)